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12. 16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11. 28.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 11. 28.
- 다. 상정일자 :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위원회(2000.12.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정원배 도시개발과장)

가. 제안이유

2000년 7월 1일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의 관련규정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와 더불어 시행된 현행 도시개발법(법률 제6242호)의 관련 규정으로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저촉되어 철거되는 지장물 중 분양지를 지정받지 못하거나, 분양지를 희망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은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 도시개발법 시행과 더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으로 정비함.(안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저촉되어 철거되는 지장물 중 분양지를 지정받지 못하거나, 분양지를 희망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주택특별 공급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민간참여를 통한 다양한 토지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 도시개발법이 제정(2000. 1. 28 법률 제6242호)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도시개발법 관련규정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2000년 11월 20일 "무허가건물 정비사업 업무처리 기준 지침" (재개 58554-3307)이 시달되어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하던 것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 제16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0. 12. 16.

제안자 : 시민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동 조례(안) 중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조례 제16조 중 "관할동장(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장은 제외)"은 "구청장"으로 함.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함.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16조 중 "관할동장(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장은 제외)"은 "구청
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 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6조(중전 토지등의 소유권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이 될 중전토지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u>관할동장(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장은 제외)</u>이 발행한 무허가건축물확인원에 의한다.</p>	<p>제16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6조(중전 토지등의 소유권)</p> <p style="text-align: center;">구청장</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p>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0.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2000년 7월 1일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의 관련규정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와 더불어 시행된 현행 도시개발법(법률 제6,242호)의 관련규정으로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가.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저촉되어 철거되는 지장물중 분양지를 지정받지 못하거나, 분양지를 희망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은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나. 도시개발법 시행과 더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도시개발법 관련규정으로 정비함 (안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

3. 개정근거

가. 도시개발법(2000.01.28. 법률 제6242호)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2조 및 부칙 제3조

나. 도시개발법시행령(2000.08.02 대통령령 제16933호) 제49조, 제52조 및 부칙 제5조

다. 도시개발법시행규칙(2000.08.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 제21조 및 부칙 제3항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0.10.16~2000.11. 5) 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0.11.10)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13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시영아파트특별분양지침”을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제53조”를 “도시개발법 제27조 및 제29조 내지 제32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각각 “도시개발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저촉토지등의 조치) ① ~ ③(생략)</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에 대하여는 <u>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지침</u>에 따른다.</p> <p>⑤ (생략)</p>	<p>제13조(저촉토지등의 조치) 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 ----- ----- -----<u>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u>에 따른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20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생략)</p> <p>② <u>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제53조</u>의 규정에 따라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제20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도시개발법 제27조 및 제29조 내지 제32조</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감보울 적용) ①관리처분계획시의 감보울계산은 <u>토지구획정리사업법</u> 관련 규정에 의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21조(감보울 적용) ①----- -----<u>도시개발법</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3조(채비지등의 관리처분) 사업경비에 충당할 채비지 및 보류지등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는 <u>토지구획정리사업법</u>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3조(채비지등의 관리처분) ----- ----- -----<u>도시개발법</u>----- -----</p>